

학교법인 성지학원

[2020학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적이사	8인	2인
참석이사	6인	0인

1. 회의일시: 2020년 12월 22일(화) 14:00~14:50 (소집통지일: 2020년 12월 14일)

2. 회의장소: 부산외대 회의실(본관 F603 회의실)

3. 임원 출결사항

- 참석임원: 6인 (이사장 직무대행 이복수
이사 정길수, 오지섭, 윤효선, 윤수길, 정연승)
○ 불참임원: 4인 (이사장 정해린, 이사 김요한, 감사 안창엽, 정혁주)
○ 배석인원: 사무국장 서정학, 부산외국어대학교 기획처장 문상호

4. 안건

- 제1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제2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
- 제3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1학년도 편제개편(안)
- 제4호 의안: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자산손실(안)
- 제5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교비회계 기채 연장 허가 신청(안)
- 제6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 처분(안)
- 제7호 의안: 법인 정관 개정(안)
- 기타: 간서명 이사 선임

5. 개회선언

14시 00분에 사무국장이 정해린 이사장께서 사고로 인하여 오늘 제5차 이사회에 참석하기 어려움에 따라 정관 제28조 제1항에 의해 이복수 이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하여 이사회 주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도록 하는 절차와 이사장의 위임장을 출석 이사에게 설명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구하다. 이에 정길수 이사는 정관에 의한 절차이므로 직무대행 지명에 대하여 동의하고, 윤수길 이사의 재청과 함께 이복수 이사를 제외한 출석 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며 이복수 이사께 이사회 주재를 요청하다.

<간서명>	이복수	정연승
-------	-----	-----

14시 03분에 이복수 직무대행께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재적이사 8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받은 후, 이사회 개최에 대한 임원들의 동의를 받아 2020학년도 제5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교내 기숙사 학생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됨에 따라 대면 보고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단순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참석하여 설명하지 않고 사무국장이 대신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다. 또한 심의 중에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참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의 요청으로 정길수 이사의 기도인도 후 회의가 시작되다>

6. 안건심의

□ 제1호 의안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1) 이사장 직무대행은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 문상호 기획처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문상호 기획처장이 회의실에 입실하다>

2) 문상호 기획처장이 배부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임용절차를 거쳐 상정된 전임교원 임용(안)에 대해 설명하고 아래 재임용(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구하였다.

▶ 아래 재임용(59명)

연번	직종	소속	성명	현직위	임용기간		심사 결과	사유
					현재	재임용		
1	전임교원A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2	전임교원B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3	전임교원B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4	전임교원B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5	전임교원B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6	전임교원B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7	전임교원B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8	전임교원B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간서명>	이 복 수	정 연승
-------	-------	------

연번	직종	소속	성명	현직위	임용기간		심사결과	사유
					현재	재임용		
9	전임교원B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10	인문한국 교원B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11	교육중점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12	교육중점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13	교육중점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14	교육중점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15	교육중점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16	교육중점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17	교육중점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18	교육중점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19	교육중점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20	교육중점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21	교육중점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22	교육중점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23	교육중점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24	교육중점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25	교육중점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26	산학협력 중점교원 (산학교육형)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27	산학협력 중점교원 (산학교육형)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28	산학협력 중점교원 (산학교육형)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29	산학협력 중점교원 (산학교육형)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30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간서명>

이 복수

한국인

정연승

연번	직종	소속	성명	현직위	임용기간		심사결과	사유
					현재	재임용		
31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32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33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34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35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36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37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38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39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40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41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42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43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44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45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46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47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48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49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50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51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간서명>	이 복수	한수미	정연승
-------	------	-----	-----

연번	직종	소속	성명	현직위	임용기간		심사 결과	사유
					현재	재임용		
52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53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54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55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56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57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58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59	외국인 전임교원						통과	재임용 요건 충족

▶ 재임용 거부(8명)

연번	직종	소속	성명	현직위	임용기간 (현재)	심사 결과	사유
1	전임교원B					탈락	연구실적 미충족
2	교육중점 전임교원					탈락	연구실적 (학생취업) 미충족
3	교육중점 전임교원					탈락	연구실적 (학생취업) 미충족
4	산학협력 중점교원 (IPP형)					탈락	IPP성과지표 미충족
5	산학협력 중점교원 (IPP형)					탈락	IPP성과지표 미충족
6	산학협력 중점교원 (IPP형)					탈락	IPP성과지표 미충족
7	산학협력 중점교원 (IPP형)					탈락	IPP성과지표 미충족
8	산학협력 중점교원 (IPP형)					탈락	IPP성과지표 미충족

<간서명>

이 복수

이복수

정연승

※ 재임용 거부(8명) : 2020년 12월 현재. 재임용 요건 미충족으로 재임용 거부
(2021년 1월 31일까지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자가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에 재심의 가능)

- 3) 정길수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윤효선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를 선포하다.

□ 제2호 의안 : 부산외국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

- 1) 이사장 직무대행은 당초 이사회 통보서에 포함된 안건 중 「교직원복무규정 개정(안)」「교직원 출장 및 교원 해외여행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안)」「교원국외여행규정 폐지(안)」은 교내 학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회의개최가 지연되어 규정개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사회 안건에 상정되지 못하였음을 설명하고, 규정개정 절차를 거쳐 제정된 자체규정 개정(안)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기획처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2) 기획처장이 배부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제정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부산외국어대학교 자체규정 개정(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구하다.

□ 「직제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및 사유

○ 총장 직속 비서실 신설

- 총장실 비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정책 현황 보고 및 보좌 지원 업무
- 대학발전방향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대학의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 지원

○ LINC+사업단 산하 지역중소기업협업센터를 미래산업연계교육센터로 직제명 변경

- 미래 산업과 연계된 산학협력교육에 대한 역할이 강조됨
- LINC+사업단의 경쟁력 확보와 창조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산하 센터 역할 변경 및 강화 필요

○ 러시아·중앙아시아 연구소 폐지(해산)

- 연구소 운영 예산 등 여러 환경적인 문제로 활동이 어려우며 차후 상황을 고려하여 이름만 남겨 유지하려 하였으나 기타 사무행정을 행해야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점과 현재 그에 맞게 행정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러시아·중앙아시아연구소의 요청에 따라 해산 진행

- 3) 정길수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정연승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를 선

<간서명>	이 복	↑	↑ 정연승
-------	-----	---	-------

포하다.

<문상호 기획처장이 회의실에서 퇴실하다.>

□ 제3호 의안 :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1학년도 편제 개편(안)

- 1) 이사장 직무대행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1학년도 편제 개편(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직전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학원 편제개편(안)에서 일부 학과(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이므로 해당 부서장 대신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2) 사무국장이 배부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직전 2020학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2021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편제개편(안)을 의결하면서, 재검토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 상정하도록 승인한 점을 근거하여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재검토를 진행한 주요 경과사항과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아래의 변경내용과 관련규정 개정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구하다.

▶ 주요 경과보고

- 개편 결과를 각 학과에 안내하는 동시에, 대상학과(전공)로부터 ‘학과 운영 계획서(신설)’ 및 ‘학과 개선 계획서(폐지유보/명칭변경)’를 제출받아 편제 개편(안)을 재검토함
- 제149차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회복지행정전공의 명칭을 현재(2020학년도) 명칭 사회복지 상담전공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의결함
 - ‘사회복지상담전공’ 명칭 변경 개편(안) 취소 사유 요약
해당 전공에서는 ‘사회복지행정전공’, ‘사회복지상담행정전공’ 등으로의 명칭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① 입학예정 인원 규모가 작고, ② 교육과정 확대 개설로 인한 비용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③ 개편을 제안했던 주임교수(강OO)가 8월말 퇴사함에 따라 주도적인 개선 노력의 어려움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명칭 변경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음.

▶ 변경 내용

- [전공 명칭변경 취소] 사회복지행정전공 → 사회복지상담전공

▶ 관련규정 개정

대학원 학칙 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은 이사장에게 위임하여 후속 조치함

- 3) 정길수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윤수길 이사가 재정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를 선포하다.

<간서명>	이) 부수	윤수길	정연승
		- 7 -	

□ 제4호 의안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자산손실(안)

- 1) 이사장 직무대행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부산외국어대학교 교비회계의 미회수 채권에 대한 자산 손실(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법률에 의한 후속조치의 내용임에 따라 해당 부서장을 대신하여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2) 사무국장이 배부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자 의 채권 관련 경과 사항을 설명하고, 아래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내용에 따른 교비회계 미회수 자산 손실 금액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구하다.

▶ 주요내용

□ 채무자 :

- 성지학원 채권액(임대차보증금) : 12,044,200원 (이자포함)
- 총 변제예정액 : 금 3,334,755원
- 변제계획 : 32개월(2020.11.25. ~ 2023.06.25.)동안 매월 105,289원 변제
(단, 2020.11.25.은 70,796원)
- 채권 미회수 금액은 회수불능으로 인해 자산 손실 처리
미회수 금액 : 금 8,709,445원 ※ 채권액(임대차보증금) - 총 변제예정액
※ 채권 손실분은 2020학년도 결산 시 회계 처리

- 3) 정연승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윤수길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를 선포하다.

□ 제5호 의안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비회계 기채 연장 허가 신청(안)

- 1) 이사장 직무대행은 부산외국어대학교 교비회계 기채 연장 허가 신청(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2) 사무국장이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 이전자금 충당을 위해 교비회계에서 제1금 융권으로부터 차입한 교육부 기채 허가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채 연장 신청(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아래 주요내용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구하다.

▶ 아래 주요내용

<간서명>	이 복수	정연승
-------	------	-----

- 기채 연장 신청 사유

- 기채 연장 신청 내용

- 기채 연장 신청[현 허가문서 사립대학정책과-1596('20.02.07.)] (단위:천원)

기채처	금액	기채 신청 기간	상환재원	대출금리
-----	----	----------	------	------

- 기채 연장 신청[현 허가문서 시립대학정책과-2855('20.03.16.)] (단위:천원)

기채처	금액	기채 신청 기간	상환재원	대출금리
-----	----	----------	------	------

3) 정연승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오지섭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를 선포하다.

제6호 의안 : 법인 기본재산 처분(안)

1) 이사장 직무대행은 법인 기본재산 처분(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2)

주택재개발 사업 진행상황에 따른 법인 기본재산 처분(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아래 주요내용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구하다.

▶ 아래 주요내용

<간서명>	○) 복수	정연승
-------	-------	-----

3) 정연승 이사는 그 동안 진행된 분양신청 및 펠지의 분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더
불어 성지고등학교의 기부채납이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재개발주택사업에 포함된 재
산을 처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오지섭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이 표결에 불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를 선포하다.

□ 제7호 의안 : 법인 정관 개정(안)

- 1) 이사장 직무대행은 법인 정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2) 사무국장이 배부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법인 정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구하다.

<간서명>	이 복수	정연승
-------	------	-----

▶ 아래 주요내용

①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0.09.25.) 반영

○ 개방이사의 자격요건 정비 (시행령 제7조의2제5항)

- 학교법인의 설립자, 그 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등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여 개방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시행령 제18조 신설)

- 해산된 학교법인 등은 해산인거나 해산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학적부 및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의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출받은 기록물을 자체 없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함.

○ 이사회 회의록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으로, "3월간 이를 공개하여야"를 "1년 동안 공개해야"로 변경함.

○ 출산·육아·입양 휴직 교원의 신분 및 처우 (시행령 제24조의6 신설)

- 해당 휴직 사유별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복,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함.

② 직제규정 개정(안) 반영

○ 주요내용

- 총장 직속 비서실 신설

- 총장실 비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정책 현황 보고 및 보좌 지원 업무
- 대학발전방향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대학의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 지원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변 경
제24조의3(개방이사의 선임) ① - ② (생략) ③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요청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제24조의3(개방이사의 선임 등) ① - ② (생략) ③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요청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간서명> 	정연승

현 행	변 경
<p>수 있다. (개정 2009.09.16)</p> <p>1. 기독교 교인(집사이상)으로서 법인의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p> <p>2.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p> <p>④ (생략)</p> <p>제35조의 2(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09.09.16)</p> <p>② (생략)</p> <p><u>제41조의 2(기록물 관리) <신설></u></p> <p>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 ③ (생략)</p> <p><u>④ <신설></u></p> <p>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 ③ (생략)</p> <p><u>④ <신설></u></p> <p><u>⑤ <신설></u></p> <p><u>⑥ <신설></u></p>	<p>수 있다. (개정 2009.09.16.,2020.12.22.)</p> <p>1. 기독교 교인(집사이상)으로서 법인의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p> <p>2.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p> <p>3. <u>학교법인의 설립자 제외</u></p> <p>4. <u>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u></p> <p>5. <u>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은 제외</u></p> <p>6. <u>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은 제외</u></p> <p>④ (생략)</p> <p>제35조의 2(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09.09.16., 2020.12.22.)</p> <p>② (생략)</p> <p><u>제41조의 2(기록물 관리)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학적부,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본조신설 2020.12.22.]</p> <p>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 ③ (생략)</p> <p>④ 제44조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0.2.22.)</p> <p>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 ③ (생략)</p> <p>④ 제44조 제7호 및 제7호의2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수당을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의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신설 2020.12.22.)</p> <p>⑤ 제44조제2호·제4호·제7호·제7호의2·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승진의 경력기간을 계산 시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신설 2020.12.22.)</p>

<간서명>

이) 복수

김학현

정연승

현 행	변 경
	<p>⑥ 제4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포함하여 연봉 기본급을 결정한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신설 2020.12.22.)</p>
<p>제92조(하부조직) ① (생략)</p> <p>② 대학교에 <u>총무처</u>, 대외협력홍보실, 감사실, 산학협력단, 만오교육문화원, 안전방재관, 교학처, 기획처, 입학관리처 대학혁신사업단, 특수외국어사업단, 진로취업처/대학일자리센터, 국제교류처, LINC+사업단, IPP사업단, 청해진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5.09.22., 2015.12.18., 2016.03.30., 2016.07.22., 2017.06.22., 2017.09.22., 2018.08.24., 2019.02.13., 2019.07.01., 2020.02.07.)</p> <p>③-⑤ 생략</p>	<p>제92조(하부조직) ① (생략)</p> <p>② 대학교에 <u>비서실</u>, <u>총무처</u>, 대외협력홍보실, 감사실, 산학협력단, 만오교육문화원, 안전방재관, 교학처, 기획처, 입학관리처 대학혁신사업단, 특수외국어사업단, 진로취업처/대학일자리센터, 국제교류처, LINC+사업단, IPP사업단, 청해진사업단을 둔다.(개정 2015.09.22., 2015.12.18., 2016.03.30., 2016. 07.22., 2017.06.22., 2017.09.22., 2018.08.24., 2019.02.13., 2019.07.01., 2020.02.07., <u>2020.12.22.</u>)</p> <p>③-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개정 2020.12.22.)</u></p> <p>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 제3항, 제35조의2 제1항, 제41조의2, 제46조 제4항, 제47조 제4항 내지 6항의 시행일은 사립학교법시행령 부칙(법률 제31049호, 2020.09.25.) 제1조를 따른다.</p> <p>② (경과조치) 제24조의3 제3항 개방이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는 사립학교법시행령 부칙(법률 제31049호, 2020.09.25.) 제2조를 따르고, 제35조의2 이사회와의 공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는 사립학교법시행령 부칙(법률 제31049호, 2020.09.25.) 제3조를 따른다.</p> <p>③ (적용례) 제46조 제4항, 제47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는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7078호, 2020.03.24.) 제2조를 따른다.</p>

3) 정연승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윤효선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이 표결에 불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를 선포하다.

기타

<간서명>	○) 		정연승
-------	--	--	-----

하다.

- 2) 정길수 이사는 이사장 직무대행, 윤효선 이사, 그리고 정연승 이사를 선임할 것을 동의하고 오지섭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를 선포하다.
- 3) 아울러 회의록 공개 시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8조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 및 법인 주요 경영에 관련되는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윤수길 이사 동의와 오지섭 이사 재청 및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7. 폐회선언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14시 50분에 2020학년도 제5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 후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출석이사 전원 서명 날인하다.

2020년 12월 22일

학교법인 성지학원 이사장 직무대행 이 복 수 이 복수
이 사 정 길 수 정 길 수
이 사 오 지 섭 오 지 섭
이 사 윤 효 선 윤 효 선
이 사 윤 수 길 윤 수 길
이 사 정 연 승 정 연 승